

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8
----------	----

제출년월일 : 1999. 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역문화예술 진흥, 지역사회 정보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립된 평창군립도서관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 등은 근거를 정함(안제4조)
- 나. 시설의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제5조)
- 다. 교육기관 및 민간사회단체(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제9조)
- 라. 군수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안제10조)
- 마. 수탁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 및 결산서 제출에 관한 근거를 정함(안제11조, 제12조)
- 바.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는 감독근거를 정함(제14조)
- 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안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운영비 확보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기간('99. 4.21-5.10)중 의견없음 -별첨
-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원도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평창군립 도서관은 진부면 하진부리 166-18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포함한다.
2. "열람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의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내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강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내의 문화교실 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 등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가능한 부속시설의 사용허가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부속시설은 전시실, 시청각실을 말하며,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①도서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문화교실 강좌를 수강등록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문화원, 공익법인체 등에서 시행하는 교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강좌 등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또는 도서관 직원상조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7조(사용자 변상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기관 및 사회교육기관 또는 민간사회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매점·식당·주차장 운영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①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매년 지원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년도 개시 3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
2. 세부사업집행 계획

제12조(예산 및 지출) ①수탁자는 매 사업년도 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회계년도 개시일 6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 사업년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사회 정보화, 평생교육 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무상사용 국·공유재산은 도서관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를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군수와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기타 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4조(감독) ①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철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와 제14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내의 안전 및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변상) ①도서관 이용자가 도서 및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 및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도서 및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도서관내 문화강좌 수강자가 수강시설 또는 수강용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관외대출)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자료)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의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기증자료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④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장서의 100분의 3이내로 하되, 당해 연도 수집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문화시설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군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 설치)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하며,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를 포함한다.

②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둔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료복사료

장비명	구분	규격	사용기준	요금	비고
전자복사기	B5		1매 단면	30원	
			1매 양면	50원	
	A4		1매 단면	40원	
			1매 양면	60원	
B4		1매 단면	50원		
		1매 양면	80원		
A3		1매 단면	60원		
		1매 양면	100원		

2. 부속시설 사용료

구분	1일	2~3일	4~6일	비고
전시실	30,000원	50,000원	80,000원	7일이상은 대관 안함
시청각실	30,000원	50,000원	80,000원	

3. 문화강좌 수수료(수강료)

- 어린이 문화교실 : 월 3만원 이하
- 청소년 문화교실 : 월 4만원 이하
- 성인문화(상담)교실 : 월 5만원 이하

관계법령발췌서

□ 도서관 및독서진흥법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에게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공공도서관은 모든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이동도서관 또는 대출문고를 설립하여 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제22조(공립도서관의 운영) ①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공립공공도서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설립·운영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 범위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공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그 자료구입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협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

평 창 군

우 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0374)120, 330-2293/전송 30-6356
처리부서 본관(4층)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담당 : 지방행정주사 지형근 실무자 : 이용섭

문서번호 문관 86000 - 553
시행일자 1999. 5. 27.

발음 내부결재
참조

취급		군 수	
보존		762120	
부군수	전 결		
과 장	신만희		
기안	지형근		협조

제목 평창군립도서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결과 보고

평창군립도서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99. 4. 21 ~ 5. 10(20일간)
2. 예고방법 : 평창군보 게재, 군, 읍·면 게시판
3.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붙임 : 1. 읍·면 예고 결과 1부

2. 군보 사본 1부.끝.

평 창 군 수